

#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서

(지하철 9호선3단계 922공구 937정거장 #1출입구 등)



2017년 02월



서         울         특         별         시

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

#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변경 설치 협약서

(지하철9호선 3단계 922공구 937정거장 #1출입구 등)

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937정거장(이하 “정거장”이라 한다)의 #1출입구 및 환기구의 지상노출 부대구조물은 둔촌주공아파트 부지측 강동대로 보도부에 설치토록 설계되어 시공 예정 중에 있었으나, 서울특별시고시제2015-23호(2015.01.22)에 따라 “정거장”에 인접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공공공지로 평행 이동하여 위치를 변경(이하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이라 한다.)하기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되어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통보(주택건축과 -21568, 2015.07.31)됨에 따라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的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이라한다)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한다.)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협약의 목적) 이 협약의 목적은 보도내 돌출시설의 위치 조정으로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함에 있다.

- ① 지하철9호선 3단계구간(922공구 포함) 개통(2018.10월)에 대비한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의 적기 시공.
- ②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시행의 범위 및 기준
- ③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사업비 확정, 비용부담 납부, 정산
- ④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시행절차
- ⑤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의 재산권 귀속 등.

## 제2조(공사시행의 범위 및 기준)

- ①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에 대한 공사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(감리)는 “서울시”가 시행하고, “조합”은 적극 협조하며, 주요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Ⓐ 936S2E2환기구(급기 및 배기)
  - Ⓑ 937정거장시점 #1 환기구(급기)
  - Ⓒ 937정거장 #1 출입구(캐노피, E/V 및 기계식 자전거주차대 포함)
  - Ⓓ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기능 발현을 위한 건축, 기계, 전기 공사 등

- Ⓐ 지장물(한전/통신/도시가스) 이설 및 복구
  - Ⓑ 지장물(하수관/통신관) 매달기 및 복구
  - Ⓒ 지장수목(교목/관목) 이식 및 원상복구
  - Ⓓ 지상 지장물(가로등/자전거보관대/벤치/담장 등) 이설 및 복구
  - Ⓔ 가설 보행로 신설 및 복구
  - Ⓕ 포장 및 부대공사 등
- \* 공공공지 내 돌출 시설물
- Ⓖ 936S2E2환기구 및 937정거장시점 #1 환기구 수직덕트 구조물
  - Ⓗ 937정거장 #1 출입구 캐노피, E/V 및 기계식 자전거주차대 출입구

- ② “서울시”와 “조합”은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『도시철도법』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, 『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』, 『민법』 및 관계법령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③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의 규모는 제2항에 따라 시공 시 조정될 수 있으며 “조합”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  - ④ “조합”은 본 협약 후 “서울시”에 작업에 필요한 작업구간(지장물 이설, 가설 보행로 등 필요부지 포함)을 제8조의 기한이 완료될 때까지 점용토록 토지 사용승인을 해야 하며, 토지사용승인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한다. 기부채납 되는 공공공지는 구조물 점유면적 외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면적(“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” 제4조(보상대상 범위)1항1,2)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\* “서울시”에 기부채납 되는 공공공지 내 (현 “조합”的 소유)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的 구조물 면적은 아래와 같다. 단, “서울시”는 제반여건 변경 시 이를 “조합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위 치	이전 시설물	면적 및 규모	비고
재건축정비 사업부지 (공공공지)	936S2,E2환기구(급기, 배기)	면적: 121.2m <sup>2</sup> (B=11.3m, L=2.9m, B=13.2m, L=2.9m)	총면적 : 716.2m <sup>2</sup>
	937정거장시점 #1환기구(급기)	면적: 60.5m <sup>2</sup> (B=5.6m, L=3.0m)	
	937정거장 #1 출입구	면적: 534.5m <sup>2</sup> (B=7.7m, L=58.9m)	

### 제3조(비용부담 및 납부, 정산 등)

- ① 제2조 제1항에 따른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, 시공단계 건설사업감리비(감리비), 행정경비(사업관리비) 등 제반 사업비(이하 “사업비”라 한다.) 일체는 “조합”이 부담한다.
- ② 제2조 제1항에 따른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“조합”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“서울시”는 제출된 설계도서 검토 및 “조합”과 협의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확정한다.
- ③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비(감리비)는 건설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 적용한다.
- ④ 공사에 따른 제반 행정경비(사업관리비) 산정은 조달청 비율을 적용한다.
- ⑤ “조합”은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·지하 위험물, 오염물질, 폐기물 및 지장물(이하 “ 지장물 등 ”이라 한다.)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 한다.
- ⑥ “조합”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설계도서 확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“ 지장물 등 ”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, “조합”은 “ 지장물 등 ”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, 그에 따른 처리비용은 “조합”이 부담한다.
- ⑦ “조합”은 제2조 제4항의 작업구간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,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처리비용은 “조합”이 부담한다.
- ⑧ “조합”은 확정된 “사업비”를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 진행 공정별로 (협약체결 후 즉시 지장물 이설비용 납부, 공사 착수 시 “사업비” 50%, 공정률 50% 시 잔여 “사업비” 50%) “서울시”에 현금으로 납부한다.
- ⑨ “사업비”는 공사물량 증·감에 따라 정산한다.  
※ 정산결과에 따라 “사업비” 부족시 “조합”은 “서울시”에 추가 납부하고, 잔액발생시 “서울시”는 “조합”에 예산 반납한다.
- ⑩ 공사위탁 책임감리업무에 따른 제반비용은 “서울시”에서 산정하여 “조합”에 통보하고, 그에 따른 처리비용은 “조합”이 부담한다.

#### 제4조(시행 절차)

- ① “조합”은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의 설계도서(이하 “변경설계도서”라 한다)를 2017년 02월한 “서울시”에 제출하여 “변경설계도서”의 적정성과 “사업비”를 확정하여야 한다.
- ② “조합”은 공공공지에 대하여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에 선행하여 지적 공사의 경계점의 좌표 및 표고를 확정·공용토록 한다.

#### 제5조(도시계획 시설(변경)결정)

- ① “서울시”는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에 대하여 “조합”的 “사업비” 납부 및 시행절차 등이 원만히 이행되는 조건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.
- ② “서울시”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“조합”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측량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(시설물의 귀속)

- ① “조합”은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이 설치되는 공공공지와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을 준공과 동시에 “서울시”에게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.
- ② “조합”은 공공공지 및 공공공지 상의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시설물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설정(근저당, 담보설정 등)을 할 수 없다.

제7조(공공공지의 변경)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와 관련하여 공공공지 면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그 면적은 추후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.

제8조(협약기한) 협약기한은 지하철사업의 개통 및 준공,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의 “사업비”에 대한 정산과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등 제반 절차의 완료시한을 기한으로 한다.

제9조(협약의 승계) “조합”은 제6조의 공공공지를 “서울시”에게 기부채납 할 때 까지 공공공지의 재산(토지, 건물 등)과 관련된 권한을 제3자에 양도할 경우에는 제3자가 본 협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,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“서울시”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“서울시”에 손해액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타조건) 본 협약은 기본 협약사항으로 세부항목 또는 필요 사항은 “서울시”와 “조합”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1조(효력의 발생) 본 협약은 “서울시”와 “조합”이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하며 본 협약체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제12조(분쟁의 해결) 서울시는 “조합”에서 부담하는 “사업비”를 집행함에 있어, 신의와 성실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며,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은 “서울시”와 “조합”이 합의하여 우선 해결하고, 협의에 의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관할법원은 “변경 출입구, 환기구 등”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

2017. 02. 03.



“서울시” 서울특별시(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

시장 박 원



“조 합”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

(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89가길 30, 4층)

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최 찬 성

